

#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대해 알아본다(I)

세계 교역질서를 재정비하게 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기존의 상품위주의 체제는 물론 지적소유권, 서비스, 투자 등 New Issue 등을 다루고 있어 일대 전기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本稿는 상공부에서 발행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우리의 대응”이란 자료에서 전자산업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개요 및 내용과 그별 협상 상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1.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개요

### 1. 의의와 배경

'86. 9 우루과이 Punta del Este 각료선언에서 출범한 GATT의 제8번째 다자간 협상으로서 현행 GATT 체제로는 80년대 양자주의, 지역주의 등 보호주의 확산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대폭 강화하여 세계 무역자유화 진전과 함께 경제발전 촉진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그 배경이다.

### 2. 협상의제

#### ○ 시장접근 확대

- 관세인하
- 비관세장벽 완화
- 섬유와 농산물 교역자율화

#### ○ GATT 규율강화

- 반덤핑, Safeguards 조치, GATT상의 예외적 수량규제조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율강화

- GATT의 분쟁 해결능력 및 각국 정책감시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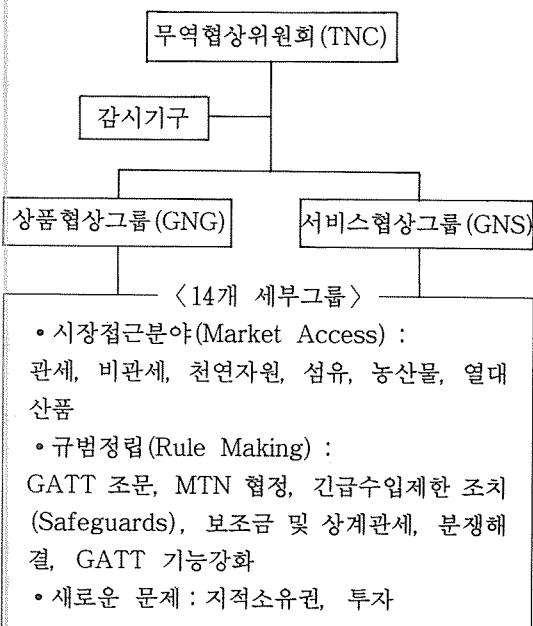
#### ○ New Issues에 대한 규범 마련

- 서비스 시장의 개방, 해외투자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규범 마련

### 3. 협상기한

'90. 12. 3~7, Brussels 각료회의에서 종결 예정

### 4. 협상체계



※감시기구는 UR 협상기간 중 각국의 신규보호조치 도입을 방지하고 기존 보조치의 동결과 철폐(Standstill/Rollback)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

## 2. 협상 진행상황 및 향후전망

### 1. 협상 진행상황

#### 가. 전반적인 상황

(1) '88. 12 중간평가를 위한 각료급 TNC 회의(몬트리올)

농산물, 섬유, Safeguraeds, 지적소유권 등 4개 그룹에 대한 미합의로 전체에 대한 합의 실패한 후 이의 후속으로 개최된 '89. 4 고위 실무자급 TNC 회의에서 합의.

(2) '90. 4 TNC 회의(제네바)

7월 TNC까지 15개 세부 그룹별로 조건부 협상타결안(Conditional agreements)을 마련하여 최종 협상안에 대한 윤곽(Profile of final package)을 도출하기로 합의.

(3) '90. 7. 23~26 TNC 회의(제네바)

각국의 기존입장 고수 등 협상진전 부진에 따라 당초 협상목표인 "Profile of final package" 도출시도를 포기하고 협상 그룹별로 주요쟁점 및 결정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다만, 12월 브뤼셀 회의에서 UR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종단계의 협상 계획에 합의.

#### 나. 분야별 상황

(1) 시장접근 분야 :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

○ 관세 : 33% 이상의 관세인하와 대폭적인 관세양해 방침에는 기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품목별 양자협상 과정에서는 각국이 이해 대립.

(2) 규범정립 분야 : 제도적,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

(3) 신분야 : 선진국과 개도국이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이 가장 큰

	의견접근분야(기 합의사항 포함)	쟁점분야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수준보다 1/3 이상 인하, 대폭적 양허</li> <li>• R/O 방식에 의한 협상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42개국이 offer list(관세인하계획)를 제출, 이를 토대로 양자협상 진행중</li> <li>- 우리나라 관세인하 33.5%, 양허범위 81.1%에 달하는 offer list 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대상에 농산물 분야 포함 여부</li> <li>• offer list 제출국의 인하계획의 질과 양의 형평성 확보문제</li> <li>• 개도국의 신규양허에 대한 credit 인정여부</li> <li>• 양자협상 과정에서의 상대국 관심품목 반영 여부</li> </ul>
비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 방식에 의한 협상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34개국이 Request list(상대국 비관세조치 철폐요청)를 제출, 이를 토대로 양자협상 진행중</li> </ul> </li> <li>• GATT내에 원산지규정 논의를 다룰 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대상에 농산물 분야 포함 여부</li> <li>• 각국 Request 범위의 불균형 조정 문제</li> <li>• 원산지 판정기준의 harmonization 방법</li> <li>• 선적전 사전검사를 규율하는 guideline의 구체성 정도</li> </ul>
세이프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ER, OMA 등 회색지대 조치의 철폐 또는 신협정에 합치</li> <li>• 발동요건 완화 및 명료화</li> <li>• 구제조치의 한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량규제 :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수준은 유지</li> <li>- 발동요건 : 최초 구제기간은 3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3년이내 연장)</li> </ul> </li> <li>• 보복요건 완화 : 적법, 단기간 조치일 경우 피규제국의 보복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차별원칙 준수 또는 예외적인 선별적용 허용</li> <li>• 회색조치 철폐시한 설정 및 예외 인정 여부</li> </ul>

	의견접근분야(기·합의사항 포함)	쟁점분야
반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절차, 개시, 조사내용,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표를 의무화 하는 등 명료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w Issue(수입국 주장) : 우회덤핑, 반복덤핑, 상습덤핑의 규제</li> <li>반복덤핑의 강화 및 개선(수출국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덤핑피해 판정기준의 합리화</li> <li>- 조사절차의 강화</li> <li>- 반덤핑 관세의 소멸시효, 재심절차 확립</li> </ul> </li> </ul>
보조금 상관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상 frame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혜용보조금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지보조법, 혜용보조금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대상보조금의 목록 및 피해구제방안(상계조치를 위한 피해조사 생략 여부 등)</li> </ul> </li> <li>상계관계 부과절차의 강화 : 피해판정기준, 조사실시 요건, 상계관계 소멸시효 및 재심절차 확립</li> </ul>
GATT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허표 수정(2조 1항 B)에 있어서 관세 이외의 각종 과정금, 부과금을 관세와 함께 양허표에 명시</li> <li>국영무역 운영과 관련하여 GATT에의 통고 및 상대국의 역 통고절차를 강화</li> <li>양허 재협상과 관련하여 대상품목의 수출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추가 협상권을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수지 관련조항(제 18조 B), 관세동맹(제 24조), Waiver(제 25조 5항), 잠정적용 의정서, 국영무역(제 17조 등)</li> </ul>
GATT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별무역정책 검토제도(TPRM) 조기시행</li> <li>GATT에의 각료급 참여확대(최소 2년마다 각료급 총회 개최)</li> <li>통고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고대상 무역조치목록을 작성</li> <li>- 중앙통고 등록소 설치(주요 통고사항 등록, 통고내용 요약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각료급 회의 설치 여부</li> <li>IMF, IBRD와의 연계강화 방안</li> <li>GATT의 국제기구 성격 확립 방안(카나다의 WTO 설립 구상, EC의 MTO 설립 구상 등)</li> </ul>
분쟁해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 설정(이해 당사국과의 협의 요청일로부터 패널 보고서 채택시까지 총 15개월 이내)</li> <li>패널권고 시행에 대한 감시(보고서 채택 후 6개월 경과시부터 계속 이사회 상정)</li> <li>증개(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절차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방 조치의 금지 문제</li> <li>패널보고서 채택시의 의사결정 방법(consensus 원칙 고수 또는 이해 당사국의 참여 배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관련 상소(Appeal) 절차 도입 여부 및 이의 성격, 권한 등도 논의</li> </ul> </li> <li>패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기간 부여 문제</li> </ul>

협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지적소유권 : 선진국은 권리보호 수준을 강

화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해서 국제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접근분야(기합의사항 포함)	쟁점분야
지적소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대상(영업비밀권 포함 여부)</li> <li>보호정도, 보호기간</li> <li>강제실시권 인정 여부</li> <li>시행절차에 관한 국제 규범의 구체화 정도</li> <li>협정 결과의 이행 주관기관 (GATT 또는 WIPO)</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제한 조치의 범위 및 규제방법</li> <li>개발 측면의 고려 정도</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일반협정, 분야별 주석서 제정, 최초의 자유화 약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상중</li> <li>분야별 주석서 (Sectoral Annotation) 의 성격 및 대상분야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서비스 협정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특정 서비스 분야에 관한 사항 추가 설명</li> <li>대상분야 : 금융, 통신, 건설, 엔지니어링, 교통, 전문직서비스(회계, 법무, 세무, 보건 등) 관광, 노동력 이동</li> </ul> </li> <li>서비스 일반 협정의 협정 대상을 모든 서비스 분야로 한다는데 의견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진적 자유화 추진 방식(Negative or positive)</li> <li>최초의 자유화 약속에 관한 협상 및 범위 (Initial commitment)</li> <li>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보장 수준(유보 허용 정도)</li> </ul>

반면, 개도국은 권리의 활용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각국의 시행절차는 국내법에 자율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는 입장

○ 서비스 : 선진국이 가급적 많은 분야를 초기 개방하려고 하는 반면 개도국은 접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자는 입장

## 2. 향후 협상진행 방향

### 가. 실질협상

○ 각 협상그룹별로 세부 품목이나 분야별 자유화 계획, 구체적인 Guideline 확정 등 실질 협상 진행

○ 관세, 비관세 : 개선된 offer (품목별 관세인 하계획 및 비관세조치 철폐계획)를 10. 15까지 제출

### 나. 종합협상

○ 10. 8~11. 23 기간중 TNC를 중심으로 하여

UR 협상전반 차원에서 주요 쟁점간에 Trade-off에 의한 진행.

○ UR이 하나의 타협안(one single undertaking)으로 마무리되는 데 따른 협상쟁점간 연관성 문제(linkages) 해결 시도

○ 동 기간중에서는 각국의 협상전반에 책임을 지는 고위관리(senior officials)가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될 수 없다(nothing is final until everything is final)”는 전제하에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네바에 있어야 함.

## 3. 향후 협상전망

농산물, 섬유, 지적소유권, 서비스 등 주요 그룹의 협상은 최종 단계까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봄(반덤핑, 개도국 국제수지

조항도 어려운 분야로 부각됨).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신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만 참여하는 Code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음.

UR이 예정된 시한내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 상실과 일방주의, 지역주의 등 보호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모든 참여국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만큼 금년말까지는 타결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임.

UR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의회의 신속승인 절차(fast track) 적용시한과 관련하여 UR의 실질적 시한을 '91. 2말까지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90. 12말까지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90. 12까지의 합의부분은 우선 시행하거나, 합의된 상태로 유보한채 '91. 2까지 협상을 계속하게 될 것임.

### 3. UR 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유리한 측면

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환경개선

수퍼 301조 협상, 쌍무주의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완화와 EC 통합 등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보호주의적 요소완화가 예상.

나. 해외 진출여건 개선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개방 등 교역상대국의 시장이 개방될 것이며 원산지 규정, 선전적 사전검사에 관한 국제 규범이 마련될 것이며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부과에 대한 규율 강화 및 회색조치의 철폐 등이 예상되어 해외투자 자유화에 따른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임.

다. 국내산업 기반의 장기적인 발전

섬유, 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며 정부의 간여 폭 축소에 따른 민간자율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촉진되어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강화 유도가 예상됨.

#### 2. 부담이 되는 측면

가. 관세

'86. 9 실행세율 기준으로 1/3 인하 하면서 GATT에 80% 정도 대폭 양허함에 따라 관세의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됨.

나. 비관세

UR에서의 Request/Offer 협상방식에 의한 비관세조치 철폐협상과 '89. 11 GATT 국제수지조항(제189조 B항) 원용 출입결정에 따라 앞으로 특별법상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철폐시켜 나가야 함.

다. 반덤핑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강화에 따라 해외투자 활동에의 제약수반

라. 보조금

모든 보조금이 금지대상 보조금, 상계조치가능 보조금, 허용 보조금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지금까지 허용되던 많은 보조금이 금지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산업육성제도 전반이 재검토되어야 함.

마. GATT 체제 강화

국내 각종 무역, 산업정책에 대한 다자적 감시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정책과 제도를 다자규범에 맞추어 명료화시켜 나가야 하며 국내정책 수행에도 많은 제약이 따름.

바. 지적 소유권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내제도 보완을 위해 특별관련 법령의 개편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첨단기술 활용에 많은 제약과 Cost가 따름.

사. 서비스

통신, 건설, 교통, 관광, 전문직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분야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국내서비스 시장진출이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피해증대.

### 4. 우리나라의 UR 협상에의 대응

#### 1. 우리나라의 UR 참여 기본 입장

가. 기본 입장

우리나라는 양자협상에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각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다자무역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반드시 타결되도록 선·개도국간의 대립된 입장을 조정하는 교량역할 수행에 노력중이며 아울러 무임승차국, 불공정무역국가 등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경제 위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허수용.

#### 나. 관심 분야

반덤핑 규정의 명료화를 통한 동제도의 남용 방지와 서비스시장 개방시 각국이 정책목표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보장 및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GATT의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통해 미국의 수퍼 301 조 등 일방조치를 다자규범에 일치되도록 함.

## 2. 대응방안

### 가. UR 협상에서의 대응

섬유, 농산물, MTN 협정(반덤핑),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우리나라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적극 참여토록 하고 온건 선·개도국(평화그룹),

섬유수출 개도국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의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그리고 협상주도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한 의견조정 도모(미국, EC, 카나다, 일본 등)

#### 나. 국내적인 대응

대외협력위원회 및 UR 대책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 조정에 있어서 하반기 그룹간 Trade-off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제안의 현실성, 타당성 등의 종합점검과 품목별, 분야별로 개방 일정, 양허교환 등 실질 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입장을 구체화 UR에 대한 국내 홍보강화 및 학계, 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Masscom을 통한 홍보,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한 홍보, UR 협상 대책 마련시 관련업계, 연구기관 참여, 현지 협상에의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합동 참가 등을 계획.

또한 UR 이후에의 대비를 위하여 관련 무역, 산업정책 수립시 예상되는 UR 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업계 스스로도 UR 이후에 대비한 경영 전략 수립 추진이 필요하며 필요시 “UR 협상 결과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

